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등록 관련 장애진단 주요내용 안내 및 협조요청

1.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귀 기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때는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는 15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일정 기간 이상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장애인등록의 기초가 되는 서면입니다.
3. 장애인등록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협조가 필요한바, '장애진단 주요내용' 및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관계기관에 송부하니, 전문의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 전문의와 의료기관은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주시고, 기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4. 장애인등록과 관련한 장애진단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장애진단 주요내용 및 서식.
2.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신경과학회, 정형외과학회, 신경외과학회, 마취통증의학회, 재활의학회,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성형외과학회, 피부과학회, 내과학회, 결핵및호흡기학회, 간학회, 신장학회, 심장학회, 외과학회, 비뇨의학회, 뇌전증학회, 가정의학회, 직업환경의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17개시도, (참조)보건복지상담센터,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민간전문가 이순향 행정사무관 두유림 장애인정책과 전결 2025. 6. 2. 장 성재경

협조자

시행 장애인정책과-3675 (2025. 6. 2.) 접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어진동) 보건복지부 별관 10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290 팩스번호 044-202-3960 / hyang2025@korea.kr / 대국민 공개